

의안번호	2207545
의 퇴 인	임오경의원
회 답 일	2025.2.13.
추계번호	25B0273

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【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】

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34조의4 (공공 재활용기반시설의 설치)	○ 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·구청장 및 「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」 제6조에 따라 공동주택단지나 택지를 개발하려는 자는 대형폐기물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활용가능자원을 수집·보관·선별 및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.(제1항)	의무규정

II.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

1. 근거 규정

연번	조·항(조제목)	비고(미실시 및 미첨부 근거 규정)
1	안 제34조의4 (공공 재활용기반시설의 설치)	○ 제3호: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
2. 상세 사유

- 안 제34조의4에 따라 공동주택단지나 택지를 개발하는 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일 경우, 대형폐기물과 재활용가능자원을 수집·보관·선별 및 처리할 수 있는 시설 설치 의무에 따른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
- 현행법은 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·구청장으로 하여금 대형폐기물과 재활용가능자원을 수집·보관·선별 및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는데, 개정안은 재활용기반시설 설치의무 대상에 「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」 제6조¹⁾에 따라 공

공동주택단지나 택지를 개발하려는 자를 포함하려는 것임

- 2024년 기준, 전국에 설치된 재활용기반시설은 총 185개소임

[표 1] 재활용기반시설 운영 현황

시도	개소 수	처리용량 (톤/일)
서울	15	66
부산	15	18
대구	6	28
인천	1	50
광주	2	20
울산	1	5
세종	1	50
경기	27	41
강원	17	19
충북	10	21
충남	16	25
전북	9	26
전남	21	13
경북	22	16
경남	20	22
제주	2	81

자료 : 환경부 제출자료를 토대로 국회예산정책처 제작성

- 안 제34조의4에 따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활용기반시설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을 산출하기 위해서는 설치 대상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지역 내 폐기물 발생량에 관한 정보가 필요하나, 현시점에서는 설치 지역의 특정 및 폐기물 발생량 예측 등이 어렵기 때문에 합리적인 추계가 곤란함

- ‘2025년 폐기물처리시설 국고보조금 업무처리지침’에 근거하여 설치비용 단가는 해당 지역 내 폐기물 발생량에 따라 상이함

1) 「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」

제6조(택지개발사업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등)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공동주택단지나 택지(宅地)를 개발하려는 자는 그 공동주택단지나 택지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주거지역과 인접하여 생활환경에 심각한 영향이 우려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때에는 폐기물처리시설을 지하에 설치하여야 한다.

「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

제4조(택지개발사업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) ① 법 제6조제1항 전단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공동주택단지나 택지(宅地)”란 조성면적이 30만제곱미터 이상인 공동주택단지 또는 택지(이하 “택지등”이라 한다)를 말한다.

[표 2] 1개소당 시설규모에 따른 표준공사비 단가

시설	시설규모	표준공사비 단가			비고
		자동 선별	기계 선별	수동 선별	
생활자원회수 센터 및 해양폐기물 선별시설 (억원/톤)	10톤/일 이하	5.97	5.95	4.23	- 자동선별시설: 기계적 선별시설에 근적외선 선 별기 등 플라스틱 자동 선별기를 추가한 시설 - 기계선별시설: 수선별 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 여 수동선별시설에 플라 스틱 자자동선별기를 제 외한 파봉기, 트롬멜, 발 리스틱 등 기계적 처리 시설을 추가한 시설 - 수동선별시설: 사람에 의한 분리선별시설(이송 설비, 자력선별기, 압축 기, 감용기 등은 포함)
	10톤/일 초과~20톤/일 이하	4.63	4.18	-	
	20톤/일 초과~30톤/일 이하	3.6	3.3	-	
	30톤/일 초과~40톤/일 이하	3.45	2.69	-	
	40톤/일 초과~50톤/일 이하	3.31	2.39	-	
	50톤/일 초과~60톤/일 이하	3.23	2.1	-	
	60톤/일 초과~70톤/일 이하	2.98	1.95	-	
	70톤/일 초과~80톤/일 이하	2.94	1.8	-	
	80톤/일 초과~90톤/일 이하	2.92	1.71	-	
	90톤/일 초과	2.9	1.64	-	

주: 시설규모란 시설의 관할 소재지에서 발생이 예상되는 폐기물의 양을 의미함

자료 : 2025년 폐기물처리시설 국고보조금 업무처리지침

- 이상의 논의를 통해 살펴본 바와 같이 현시점에서 개정안에 따른 추가 재정소요를 합리적으로 추계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개정안은 「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」 제3조제1항제3호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에 해당함

Ⅲ. 작성자

□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경제비용추계과	장우윤	김신애

□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장우윤	02-6788-3735	jangwy93@assembly.go.kr